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수 원 지 방 법 원

제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19나60912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절차이행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

1. A

2. B

원고, 항소인 3. C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1. D

2. E

3. F

4. 대한민국

5. 망 G의 소송수계인

가. DL

나. DM

다. DN

6. H

7. I

8. J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9. K조합

10. M

11. N

12. O

피고 11, 12의 [redacted]

13. P조합

14. Q

피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15. R

피고, 피항소인 16. 주식회사 S

17. V

18. W

19. X

20. Y

21. Z

22. AA

23. AB

24. AC

피고 23, 24의 [redacted]

[redacted]

25. A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26. AE

27. AF

28. 의료법인 AG

29. AH

30. AI

31. AJ

피고 26, 28, 31의 [redacted]

[redacted]

32. AK

피고 1, 8, 10, 18, 25, 27, 32의 [redacted]

33. AL

34. AM

35. AN

36. AO

37. AP

38. AQ

39. AS

40. AT

41. AU

42. AV

43. AW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44. [redacted]도 [redacted]군

[redacted]

45. [redacted]공단

46. AX

47. AY

48. AZ

49. BA

50. BB

51. BC

52. BD

53. BE

54. BF

55. BG

피고 3, 17, 21, 33, 34, 35, 38, 39, 40, 42, 43, 50, 51, 55의

[redacted]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 1. 30. 선고 2017가단5787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15.

판 결 선 고 2020. 2. 1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선정당사자)들, 원고 선정자들 및 원고(이하 통틀어 '원고들'라고만 한다)에게 별지 상속지분 목록 기재 원고들 상속지분에 대하여,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제1항 내지 제39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0. 6. 23. 수원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접수 제555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와 별지 목록 기재 제40, 41, 4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3. 18. 수원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접수 제404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선정당사자) 및 피고 선정자(이하 모두 '피고'라고만 한다)는 별지 피고별 말소할 등기 등 목록 기재 피고별 해당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각 이행 또는 피고 D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근

판사 이환기

판사 정성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선 정 자 명 단

1. 원고(선정당사자) A의 선정자

 가. A

 나. BK

 다. BL

 라. BM

 마. BN

2. 원고(선정당사자) B의 선정자

 가. B

 나. BO

 다. BP

 라. BQ

3. 피고(선정당사자) R의 선정자

 가. R

 나. BR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상속지분 목록

순번	원 고	상 속 분	비고
1	A	49/2,975	BS의 상속인
2	BK	49/2,975	〃
3	BL	49/2,975	〃
4	BM	49/2,975	〃
5	BN	49/2,975	〃
6	BO	35/2,975	BT의 상속인
7	BP	35/2,975	〃
8	BQ	105/2,975	〃
9	B	70/2,975	〃
10	C	245/2,975(=7/8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부동산 목록

1. [redacted] 군 BU 대 657㎡
2. [redacted] 군 BV 대 880㎡
3. [redacted] 군 BW 대 430㎡
4. [redacted] 군 BX 대 849㎡
5. [redacted] 군 BY 대 694㎡
6. [redacted] 군 BZ 대 657㎡
7. [redacted] 군 CA 대 655㎡
8. [redacted] 군 CB 대 208㎡
9. [redacted] 군 CC 대 841㎡
10. [redacted] 군 CD 대 309㎡
11. [redacted] 군 CE 대 401㎡
12. [redacted] 군 CF 대 833㎡
13. [redacted] 군 CG 도로 353㎡
14. [redacted] 군 CH 임야 567㎡
15. [redacted] 군 CI 대 525㎡
16. [redacted] 군 CJ 도로 9㎡
17. [redacted] 군 CK 대 567㎡
18. [redacted] 군 CL 임야 747㎡
19. [redacted] 군 CM 도로 529㎡
20. [redacted] 군 CN 대 725㎡
21. [redacted] 군 CO 임야 624㎡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22. [redacted] 군 CP 임야 458㎡
23. [redacted] 군 CQ 임야 330㎡
24. [redacted] 군 CR 임야 727㎡
25. [redacted] 군 CS 임야 661㎡
26. [redacted] 군 CT 임야 698㎡
27. [redacted] 군 CU 임야 884㎡
28. [redacted] 군 CV 임야 660㎡
29. [redacted] 군 CW 창고용지 180㎡
30. [redacted] 군 CX 임야 712㎡
31. [redacted] 군 CY 임야 660㎡
32. [redacted] 군 CZ 임야 340㎡
33. [redacted] 군 DA 임야 236㎡
34. [redacted] 군 DB 임야 596㎡
35. [redacted] 군 DC 임야 142㎡
36. [redacted] 군 DD 도로 126㎡
37. [redacted] 군 DE 임야 330㎡
38. [redacted] 군 DF 임야 318㎡
39. [redacted] 군 DG 임야 661㎡
40. [redacted] 군 DH 대 228㎡
41. [redacted] 군 DI 전 330㎡
42. [redacted] 군 DJ 전 420㎡. 끝.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피고별 말소할 등기 등 목록

각 부동산 소재지 : [redacted] [redacted]군 DK

각 부동산 관할등기소 : 수원지방법원 [redacted]등기소

1. BU 대 657㎡에 관하여,

가. 피고 E이 2008. 5. 9. 접수 제189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F이 2012. 1. 31. 접수 제36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 BV 대 880㎡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08. 11. 25. 접수 제49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3. BW 대 430㎡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08. 11. 25. 접수 제49168호 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4. BX 대 849㎡에 관하여,

가. 피고 G이 1999. 8. 12. 접수 제191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위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H, 피고 I이 2005. 2. 22. 접수 제720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5. BY 대 694㎡에 관하여,

가. 피고 J이 1998. 4. 30. 접수 제9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K조합이 2016. 7. 4. 접수 제29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16. 7. 5. 접수 제29651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6. BZ 대 657㎡에 관하여,

가. 피고 M이 2003. 6. 10. 접수 제164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N이 2013. 4. 19. 접수 제165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다. 피고 O가 2016. 1. 6. 접수 제5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라. 피고 P조합이 2016. 5. 13. 접수 제19807호로 마친 근저당설정등기

7. CA 대 655㎡에 관하여,

가. 피고 Q이 2004. 4. 6. 접수 제13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위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가 2013. 11. 6. 접수 제47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 주식회사 S이 2015. 3. 4. 접수 제87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8. CB 대 208㎡에 관하여,

가. 피고 Q이 2007. 4. 6. 접수 제1360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위 CB 대 208㎡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는 2013. 11. 6. 접수 제4721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 주식회사 S이 2015. 3. 4. 접수 제87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9. CC 대 841㎡에 관하여,

가. 피고 V이 2003. 6. 27. 접수 제18414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W이 2012. 6. 27. 접수 제27245호로 각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 K조합이 2016. 5. 23. 접수 제214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10. CD 대 309㎡에 관하여,

가. 피고 X가 2004. 1. 17. 접수 제213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Y이 2004. 5. 10. 접수 제189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 W이 2014. 7. 25. 접수 제3249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라. 피고 K조합이 2016. 5. 23. 접수 제214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와 2016. 5. 23. 접수 제21421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11. CE 대 401㎡에 관하여,

가. 피고 Y이 2004. 5. 10. 접수 제189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Z이 2014. 7. 25. 접수 제32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 주식회사 S이 2016. 9. 2. 접수 제399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12. CF 대 833㎡에 관하여,

가. 피고 AA이 2004. 3. 16. 접수 제1020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위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AB, 피고 AC가 2007. 9. 19. 접수 제36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13. CG 도로 353㎡ 중

가. 353분의 53지분에 관하여, 피고 J이 1998. 4. 30. 접수 제96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피고 K조합이 2016. 7. 4. 접수 제29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353분의 50지분에 관하여, 피고 M이2003. 6. 10. 접수 제16405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N이 2013. 4. 19. 접수 제16575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O가 2016. 1. 6. 접수 제553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P조합이 2016. 5. 13. 접수 제1980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353분의 65지분에 관하여, 피고 V이 2003. 6. 27. 접수 제18414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W이 2012. 6. 27. 접수 제27245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K조합이 2016. 5. 23. 접수 제214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라. 353분의 49지분에 관하여, 피고 X가 2004. 1. 17. 제2130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Y이 2004. 5. 10. 접수 제18985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Y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353분의 49지분 중 353분의 21지분에 관하여, 피고 W이 2014. 7. 25. 접수 제32498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W의 353분의 21지분에 관하여, 피고 K조합이 2016. 5. 23. 접수 제214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Y의 353분의 49지분 중 353분의 28지분에 관하여, 피고 Z이 2014. 7. 25. 접수 제32499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Z의 353분의 28지분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S이 2016. 9. 2. 접수 제3993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마. 353분의 70지분에 관하여, 피고 Q이 2004. 4. 6. 접수 제13604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Q의 353분의 70지분 중 각 353분의 35 지분에 관하여,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가 2013. 11. 6. 접수 제47213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주식회사 S이 2015. 3. 4. 접수 제87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바. 353분의 66지분에 관하여, 피고 AB이 2007. 9. 19. 접수 제36097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14. CH 임야 567㎡에 관하여,

가. 피고 AD이 2003. 9. 18. 접수 제27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AE이 2007. 11. 15.접수 제446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15. CI 대 525㎡에 관하여,

가. 피고 AD이 2003. 9. 18. 접수 제27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AF이 2004. 12. 17. 접수 제53535호로 각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16. CJ 도로 9㎡에 관하여,

피고 AF가 2004. 12. 17. 접수 제5353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17. CK 대 567㎡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가. 피고 AD이 2003. 9. 18. 접수 제27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AE이 2004. 5. 7. 접수 제187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 의료법인 AG이 2015. 5. 27. 접수 제229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18. CL 임야 747㎡에 관하여,

가. 피고 AD이 2003. 9. 18. 접수 제27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AH이 2005. 6. 1. 접수 제2434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19. CM 도로 529㎡에 관하여,

가. 피고 AD이 2003. 9. 18. 접수 제27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위 부동산 중 529분의 115지분에 관하여, 피고 AE이 2004. 6. 14. 접수 제24780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의료법인 AG이 2015. 5. 27. 접수 제22995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다. 위 부동산 중 529분의 147지분에 관하여, 피고 AI이 2004. 10. 28. 접수 제45621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AJ이 2005. 1. 4. 접수 제253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라. 피고 의료법인 AG이 2010. 10. 4. 접수 제40810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라. 위 부동산 중 529분의 152지분에 관하여, 피고 AH이 2005. 6. 1. 접수 제24340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마. 위 부동산 중 529분의 115지분에 관하여, 피고 AE이 2007. 11. 15. 접수 제44646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20. CN 대 725㎡에 관하여,

가. 피고 AD이 2003. 9. 18. 접수 제27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나. 피고 AI이 2004. 10. 28. 접수 제4562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 AJ이 2005. 1. 4. 접수 제25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라. 피고 의료법인 AG이 2010. 10. 4. 접수 제408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1. CO 임야 624㎡에 관하여,

피고 AK이 2011. 10. 12. 접수 제445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2. CP 임야 458㎡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08. 11. 25. 접수 제49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3. CQ 임야 330㎡에 관하여,

가. 위 부동산 중 330분의 17지분에 관하여, 피고 E이 2008. 5. 9. 접수 제18915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AL가 2012. 1. 31. 접수 제3854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나. 위 부동산 중 330분의 3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G이 2011. 4. 26. 접수 제18344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다. 위 부동산 중 330분의 28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G이 2013. 11. 27. 접수 제50544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BG의 330분의 280지분 중 330분의 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AM이 2013. 12. 9. 접수 제52930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BG의 330분의 210지분 중 330분의 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이 2013. 12. 9. 접수 제52931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BG의 330분의 140지분 중 330분의 70 지분에 관하여, 피고 AL가 2014. 1. 10. 접수 제1509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24. CR 임야 727㎡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가. 피고 E이 2008. 5. 9. 접수 제189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AN가 2011. 11. 3. 접수 제48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5. CS 임야 661㎡에 관하여,

가. 피고 E이 2008. 5. 9. 접수 제189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AM이 2011. 11. 3. 접수 제4811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6. CT 임야 698㎡에 관하여,

가. 피고 E이 2008. 5. 9. 접수 제189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AL가 2012. 1. 31. 접수 제38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7. CU 임야 884㎡에 관하여,

가. 피고 AO가 2011. 10. 21. 접수 제460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AP이 2011. 11. 4. 접수 제4827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다. 피고 AQ이 2014. 7. 9. 접수 제2982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28. CV 임야 660㎡에 관하여,

가. 피고 AQ이 2010. 12. 28. 제5547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2012. 3. 23. 접수 제1195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AR주식회사가 2012. 8. 28. 접수 제379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29. CW 창고용지 180㎡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AS, 피고 AT이 2010. 5. 4. 접수 제17518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30. CX 임야 712㎡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AS, 피고 AT이 2010. 5. 4. 접수 제17518호로 마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소유지분이전등기

31. CY 임야 660㎡에 관하여,

가. 피고 AU가 2011. 11. 11. 접수 제492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위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AV, 피고 AW이 2015. 10. 29. 접수 제49799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32. CZ 임야 340㎡에 관하여,

가. 피고 대한민국, 피고 [redacted]군, 피고 [redacted]공단의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나. 피고 AQ이 2007. 12. 31. 접수 제513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피고 AX이 2010. 9. 30. 접수 제404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라. 피고 AY이 2012. 2. 1. 접수 제39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마. 피고 AZ이 2012. 2. 10. 접수 제54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33. DA 임야 236㎡에 관하여,

가. 피고 BA이 2011. 12. 20. 접수 제554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위 부동산 중 각 2분의 1지분에 관하여, 피고 BB, 피고 BC이 2012. 9. 17. 접수 제4085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34. DB 임야 596㎡에 관하여,

가. 피고 AK이 2011. 11. 21. 접수 제5078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피고 K조합이 2012. 8. 3. 접수 제338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와 2012. 8. 3. 접수 제33878호로 마친 지상권설정등기

35. DC 임야 142㎡에 관하여,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가. 위 부동산 중 142분의 49 지분에 관하여, 피고 AU는 2011. 11. 11. 접수 제49262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AU의 142분의 49 지분 중 각 142분의 24.5 지분에 관하여, 피고 AV, 피고 AW이 2015. 10. 29. 접수 제49799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나. 위 부동산 중 142분의 43 지분에 관하여, 피고 AK이 2011. 11. 21. 접수 제50788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K조합이 2012. 8. 3. 접수 제338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위 부동산 중 142분의 49지분에 관하여, 피고 AS은 2011. 12. 20. 접수 제55451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라. 위 부동산 중 142분의 1지분(D 잔여지분)에 관하여, 피고 [redacted]군,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36. DD 도로 126㎡에 관하여,

가. 위 부동산 중 126분의 17지분에 관하여, 피고 AU가 2011. 11. 14. 접수 제49641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AU의 126분의 17지분 중 각 126분의 8.5지분에 관하여, 피고 AV, 피고 AW이 2015. 10. 29. 접수 제49799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나. 위 부동산 중 126분의 30지분에 관하여, 피고 AK이 2011. 11. 21. 접수 제50788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K조합이 2012. 8. 3. 접수 제3387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다. 위 부동산 중 126분의 49지분에 관하여, 피고 AS이 2011. 12. 20. 접수 제55451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라. 위 부동산 중 피고 D의 나머지 126분의 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BA이 2011. 12. 20. 접수 제55452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BA의 126분의 30 지분 중 각 126분의 15지분에 관하여, 피고 BB, 피고 BC이 2012. 9. 17. 접수 제40850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37. DE 임야 330㎡에 관하여,

가. 위 부동산 중 330분의 43지분에 관하여, 피고 BD가 2011. 11. 3. 접수 제48119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나. 위 부동산 중 330분의 43지분에 관하여, 피고 BE이 2011. 11. 3. 접수 제48120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다. 위 부동산 중 330분의 66지분에 관하여, 피고 AN가 2011. 11. 3. 접수 제48121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라. 위 부동산 중 330분의 66지분에 관하여, 피고 AM이 2011. 11. 3. 접수 제48122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마. 위 부동산 중 165분의 26.5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이 2012. 1. 31. 접수 제3651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바. 위 부동산 중 피고 D 나머지 지분 330분의 59지분에 관하여, 피고 AQ이 2012. 2. 14. 접수 제5826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피고 AR주식회사가 2012. 8. 28. 접수 제3791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38. DF 임야 318㎡에 관하여,

가. 피고 AQ이 2007. 12. 31. 접수 제5131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나. 피고 AX가 2010. 9. 30. 접수 제4042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4-08

다. 피고 AY이 2012. 12. 1. 접수 제393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라. 피고 AZ이 2012. 2. 10. 접수 제54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마. 위 부동산 중 318분의 9 지분에 관하여, 피고 AQ이 2012. 2. 14. 접수 제5826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바. 위 부동산 중 318분의 309 지분(피고 D의 잔여지분)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 피고 [redacted]군의 피고 D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에 관한 승낙의 의사표시

39. DG 임야 661㎡에 관하여,

가. 피고 E이 2008. 5. 9. 접수 제1891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나. 위 부동산 중 661분의 330.5지분에 관하여, 피고 BD가 2011. 11. 3. 접수 제48115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다. 위 부동산 중 661분의 330.5지분에 관하여, 피고 BE이 2011. 11. 3. 접수 제48116호로 마친 소유지분이전등기

40. DH 대 228㎡에 관하여,

피고 BF가 2009. 3. 12. 접수 제888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41. DI 전 330㎡에 관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2008. 11. 25. 접수 제4916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42. DJ 전 420㎡에 관하여,

피고 BG이 2011. 4. 26. 접수 제1834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끝.